

## 약관(일부)변경 내용

### 1. 투자신탁의 명칭 : BEST 네띠앙 공사채 투자신탁 2호

### 2. 약관변경 주요내용

- 변경 내용 : 자산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(1.5년이내→1.8년이내)  
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조정( A2(0)이상 → A2-이상 )
- 변경 사유 : 수익자(단독)의 변경 요청

### 3. 약관변경 대비표

현행	변경(안)
<p><b>제20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)</b></p> <p>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각호 생략)</p> <p>② 위탁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편입하고 있는 <u>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(듀레이션)가 1년 6개월 이하가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3항 ~ 4항 생략)</p>	<p><b>제20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)</b></p> <p>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각호 생략)</p> <p>② 위탁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편입하고 있는 <u>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(듀레이션)가 1.8년 이하가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3항 ~ 4항 생략)</p>

현행	변경(안)
<p>⑤제1항제2호에서 "유동성자산에의 투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<b>A2(0)등급이상</b>이어야 하되, 신탁재산내에서의 <b>총CP</b> 편입비율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은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<b>A2(+)</b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) 또는 단기대출(콜론) 또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매입. 이경우 금융기관은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직전반기의 BIS 비율이 <b>10%이상인 은행</b>을 말한다.</li> <li>2. 은행,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·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</li> <li>3.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</li> <li>4.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</li> </ol>	<p>⑤제1항제2호에서 "유동성자산에의 투자"라 함은 ----- -----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 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<b>A2(-)등급이상</b>이어야 하되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좌동)</li> <li>2. (좌동)</li> <li>3. (좌동)</li> <li>4. (좌동)</li> </ol>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은 2003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